「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❍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❍ 상정일자 : 2024. 9. 5.

2. 제안이유

- ❍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,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❍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(안 제5조)
- ❍ 파쇄지원단 운영(안 제6조)
- ❍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**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**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서 **‘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, 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’**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, 농업의 미세먼지 저감[1]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5조(지원사업)**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---

1)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·농촌분야 초미세먼지(PM2.5) 배출량은 1만4900톤으로 국가 전체 발생량의 17%를 차지한다. 세부적으로는 생물성 연소(영농부산물 등)로 인한 것이 1만1500톤으로 대부분이다.

< **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** >

1. 파쇄지원단 운영
2. 농업경영체 교육
3.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
4.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❍ 안 **제8조(파쇄지원단 운영 등)**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하고 산림연접지나 고령농업인 거주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**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자구적인 지원책을 마련**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1 관계 법령

□ 폐기물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폐기물”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2. “생활폐기물”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
3. “사업장폐기물”이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임 2 **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국가정책**

산림청

산림르네상스

소각산불 '영농부산물 파쇄'로 해결!

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산불 줄이다.

① 영농부산물 파쇄 전년 대비 8배 확대

2023년(상반기) → **2024년**(상반기)

② 소각산불 10년 평균 대비 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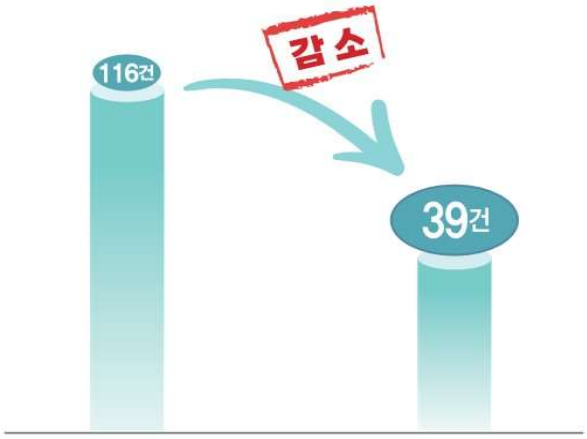

('14~'23년)116건(28%) → (2024년) 39건(22%)

범부처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다.

① 범부처 총력대응

-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
- 파쇄 추진상황 점검 (행안부, 산림청, 농진청 등)

② 협업 기반 마련

- 산림-농림부서 권역별 합동 교육
-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

③ 영농부산물 파쇄 추진

- (농식품부) 파쇄기 보급 (662대)
- (산 림 청) 산불인력활용 파쇄지원 (약 1만명)
- (농 진 청) 전문 파쇄팀 운영 (139개 시·군)

④ 적극적 홍보로 파쇄 공감대 확산

-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및 시연회
- 언론보도, 홍보 동영상 제작·배포